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7월 30~31일 3차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개괄

2011년 7월 30일 '3차 희망의 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문제 해결을 위해 만 삼천여의 참가자들이 부산지역 곳곳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후 7시경 부산지역 곳곳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경찰차벽과 검문을 통해 통행을 금지하였다. '3차 희망의 버스'에서는 경찰에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으며 85호 크레인이 보이는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교통통행과 시민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한진중공업 동문 1km지역에서 평화적인 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신검문과 통행제한, 채증 등이 발생하였다. 경찰에서는 14차례에 이르는 해산경고를 하였으며, 살수예고를 통해 집회참가자들에 공포감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경찰은 집회 시위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금지조치 하였으며,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려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또한 무차별적 채증과 과도한 통행금지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과도한 법집행으로 기본권행사에 대한 제약을 가하였다.

2.경찰 대응의 문제점

가. 경찰의 집회참가 봉쇄

1) 차벽설치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희망의 버스와 한진중공업 앞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라 판명하며 봉쇄 3거리부터 한진중공업 동문까지 1.5km에 차벽을 설치 집회참가자를 원천 봉쇄하였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라 줄임)에서는 2009년 5~6월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장 출입을 봉쇄한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서는 차벽 설치와 같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또한 헌재는 통행제한행위가 개별적 집회금지를 넘어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극단적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차 희망의 버스는 출발 전 평화적인 집회를 선포하였고, 교통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진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문화제를 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즉 경찰의 차벽설치는 법집행기구인 경찰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선조선 2공장 앞을 차단한 경찰차벽



대선조선 2공장 방향 길 차단중인 경찰병력

2) 통행제한 및 불신검문

7월 30일 당일부터 7월 31일 오전까지 한진중공업 인근 지역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및 불신검문이 행하여 졌다. 한진중공업 정문 건너편에서 한진중공업 정문으로 건너가려는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였으며, 30일 19시 종교행사에 참여하려는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종교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20분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하였다.

경찰은 차벽이 설치되지 못한 골목길에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벽을 만들었고, 인근을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검문을 진행, 거부할 시 통행을 금지하였다. 또한 30일 22시 청학동 성당에서 골목길을 통해 대선조선 2공장 으로 이동하는 집회참가자 130명의 이동을 경찰병력으로 막고 이에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 동안 골목 안에 감금하였다.

7월 30일 7시경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이 탄 희망버스가 부산대교를 건너 영도로 향하려고 하자, 경찰에서는 2시간동안 버스 진입을 막았다. 또한 대중교통을 제외한 버스가 영도대교와 부산대교를 가지 못하도록 봉쇄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은 30일 저녁부터 대중교통이 한진중공업 정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31일 오전 9시 부산 영도 황학시장 정문앞에서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2차선 도로를 와 인도를 경찰 차벽- 차량, 경찰병력으로 막고 통행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대선조선앞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려는 참가자들 및 지역 주민이 탑승한 버스를 20여분간 통행차단하여 참가자 및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산복도로로 인근 길의 경우 경찰병력에 의해 통행제한되어 영도지역의 교통불편을 야기하였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향하는 길목에 배치된 경찰들은 조선소 앞을 통과하려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영도구 주민으로 확인된 시민만 통과시켰다. 이 들중 신분증이 없는 시민들을 향해서는 어디를 가는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으며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잠깐 나와달라고 부탁하라며 통행을 제한하였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도9794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통행차단하는 경찰



신도브레뉴원 종교행사참가자를 20분간 불법감금한 경찰에 참가자가 항의하고 있다.

나. 채증 및 항의자에 대한 연행 및 폭력

3차 희망의 버스기간동안 경찰의 채증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30일 5시 종교행사에 참여하기 이동 중 경찰의 통행금지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채증하였고, 종교행사 종료 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동 중인 집회참가자 또한 채증하였다. 한진중공업 동문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경찰 차벽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채증이 이루어졌다.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에 대해 항의하자 지휘관이 채증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채증된 사진에 대한 삭제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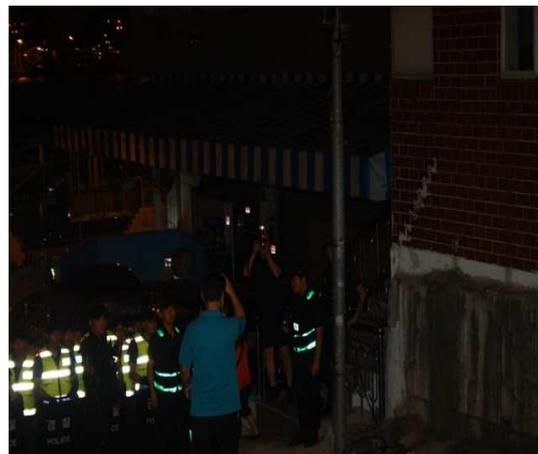
7월 31일 오전 한진중공업 동문앞에서 통행금지에 항의하는 시민이 폴리스라인을 밀치자 경찰기동대에서 즉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변호사 및 집회참가자를 채증 하였으며, 채증에 항의하는 1인이 연행되었다.

당일 부산시청에서 정리 집회를 위해 모여 있던 참가자중 일부가 폴리스라인에 피켓을 붙이려하자 기동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어 방패를 이용 참가자를 밀치고, 참가자를 연행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및 시민들을 향해 계속된 채증을 시도하였고 당시 상황과 무관하게 시청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채증이 지속되었다.

1999년의 대법원 판례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촬영을 허용할 정도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3차 희망의 버스에 대한 경찰의 채증은 인도로 통행중인 시민, 통행제한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 종교행사를 끝마치고 해산하려는 참가자등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 무차별적 증거수집에 불과하였다.



경찰의 통행제한에 항의하는 참가자 연행



경찰안내방향으로 인도 통행중인 참가자를 채증

다. 한진중공업 인근지역 집회 불허와 이른바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 및 살수 위협

3차 희망버스 주최 측은 부산시내 6곳(부산역·남포프라자·부산시민회관·경성대 앞·쥬디tm 태화·한진중공업)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3차 희망버스는 출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하였으며, 경찰 측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으며 85호 크레인이 보이는 대선조선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30일 당일 오전 대선조선앞 집회를 불허하였고, 1.5km에 달하는 차벽을 통해 시민통행을 차단하였다. 당일 주최측에서 교통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행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하였으나, 경찰 차벽과 통행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불편이 야기 되었다.

경찰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은 2011년 들어 등록금 집회, 희망의 버스 등 대규모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에 대해 대부분 불허통지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 “사실상

의 허가제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후 대규모 집회는 전면 차단되었다.

또한 7월 30일 10시부터 31일 오전 5시까지 경찰에서는 14차에 이르는 해산경고와 살수예고를 실시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협박하였으며 이는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과 다름없다.

라. 어버이연합회에 의한 폭력 및 경찰의 수수방관적 태도

30일 오후 9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 영도대교 입구는 어버이연합(이하 연합) 회원 200여명에 의해 3개 차로를 3시간 점거되었다. 10시경에는 영도로 진입하려던 82번 시내버스에 연합 회원이 밀어서 들어가 버스 통행을 막았으며 버스에 돌을 던지거나 버스를 발로 찼다. 또한 버스에 탑승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목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버이연합회 회원 60여명이 82번 버스를 밤 12시까지 붙잡아, 승객 10여명이 사실상 2시간 넘게 감금당하였다.

또한 30일 어버이연합회원들은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각목, 목검등을 휘두르며 시민을 위협하고 신분증 요구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30일 경찰은 영도대교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관망하였다.



어버이연합회원이 82번 버스에 탑승한 승객의 목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목검을 든 어버이연합회원 인도의 시민들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로 옆의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

마. 경찰 명찰등 신분확인복장 미착용

2011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프랑크 라 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초안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처벌근거를 위해 모든 법집행관들이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복장**을 착용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 6월 최종보고서에서는 ‘특별보고관의 방문 이후로, 모든 경찰복에 이름표가 부착되고, 경찰의 보호 헬멧을

착용한 경찰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기입되었다. 그러나 3차 희망의 버스기간동안 몇 명의 지휘관을 제외한 경찰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사복경찰이 채증등 공무집행을 진행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의** 중지와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처벌근거를 위해 모든 **법집행관들이**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복장**을 착용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찰보호장비착용

마. 실제 피해사례

1) 한진중공업 정문 종교행사 통행제한 및 불신검문

7월 30일 저녁 7시부터 한진중공업 앞 신도브레뉴에서 진행된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수원지역 수녀 및 신도들에 대해 경찰이 갑작스레 통행을 제한하였다.

당시 경찰은 수녀복을 착용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통행을 허가하겠지만 나머지 신도들의 이동은 금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미사를 준비하던 신부와 참가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지휘관은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채증을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도 및 참가자들이 20분간 경찰병력에 의해 불법 감금되었다. 또한 기독교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던 목회자 3인에 대해 통행 제한하였으며, 예불을 들이기 위해 참석하려던 승려 3인의 통행을 제한하여 결국 예불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2) 인도 통행자에 대한 불신검문

30일 저녁 8시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로 향하는 길목에 배치된 경찰은 조선소 앞을 통과하는 시민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중 1인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불법집회를 한다는 근거가 있느냐, 근거없이 이렇게 길을 막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경찰은 “신분증이 확인된 주민만 지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당일 밤12시경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이 주변에 방패를 전경을 배치하였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시민들의 항의에 “옳고 그름은 나중에 따지자” “행정집행중이다.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법원에서 따져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3) 통행제한 및 영도조선소 방향 대중교통 통제

30일 저녁 7시부터는 경찰의 제지로 버스 운전사가 승객과 협의 없이 버스 종점에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또한 경찰이 골목마다 병력을 배치해 10분만에 갈 수 있는 영도 조선소 세일중공업까지 2시간 30분이나 걸렸다. 8시경에는 부산 렉서스 앞에서 남포동 쪽으로 가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부산역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듯 과도한 통행제한을 가하였다.

4) 불법적 채증 I

30일 밤 9시 종교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려는 참가자들이 이동하려 하자 경찰은 대로로는 갈 수 없다고 하며 통행을 제한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채증을 하였다. 또한 경찰에서 큰길로 갈 수 없으니 뒷길로 안내하겠다고 하여 경찰을 따라 이동하던 도중 전의경부대가 병력으로 길을 막고 통행을 제한하였다. 이에 참가자들이 안내해준 길을 따라 왔는데 이동을 제한 하나고 항의하자 채증을 시도하였고, 사진 삭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3) 불법 채증 II

30일 저녁 7시 민변소속 변호사가 인도에서 통행중 경찰의 통행제한 및 불신검문에 항의하며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측 채증요원이 채증을 시도하였다. 이에 사진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채증요원은 이를 삭제 하지 않았고 거듭 알았다고만 대답하였다.

4) 항의자에 대한 연행

31일 오전 6시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에 항의하는 시민 1명이 폴리스라인을 밀어내자 경찰기동대에서 즉각 연행하였다. 당시 변호사 등이 연행이 항의하고 변호사 접견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채증에 항의하던 참석자 1인이 연행되었다.

5) 주거침입 혐의로 연행

30일 저녁 청학동 쪽으로 걸어가다 길을 잃은 대학생 두명에게 경찰이 저쪽 계단으로 가라고 알려주어 이동하였으나 길을 잘못들어 민가의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에 경찰이 대학생들을 가택주거침입혐의로 연행하고 훈방조치 하였다.

6) 어버이 연합에 의한 폭력

30일 저녁 7시경 부산 영도대교에서는 82번 버스를 어버이 연합에서 통행을 제지하고, 버스 밑에 들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연합회원들은 버스에 들어가 승객들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고 탑승하고 있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였다.

같은 시간 영도대교의 차도를 점거한 어버이연합회원들은 목경을 휘두르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공포를 형성하였고, 신분증요구를 거부한 여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건널 수 있도록 차량을 막고 건너가라고 하였으며, 폭력을 저지른 어버이연합 회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7) 용역에 의한 신분확인

30일 20시 30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앞에서 진행될 천주교 생명평화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영도 신도브레뉴'에서 하차한 참가자에 대해 정체를 알 수 없는 10여명의 남자들이 길을 차단하고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영도주민인지의 여부에 따라 통행여부를 가능하였고, 이들은 모두 검정색 모자에 검정색 작업복을 착용하였다. 이에 참가자가 항의하자 아무런 이유와 설명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체 통행할 수 없다고 되풀이 하였다. 당시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경찰에서는 이들의 신분확인에 대해 통제하지 않고 방조하였다. 이에 참가자가 112에 2차에 걸쳐 범죄신고를 하였고, 주변 경찰에게 계속 문제해결을 요청하였다. 결국 주변 경찰에서 이들에게 길을 비켜주길 요구하였다. 이에 한진중공업 사측 직원 책임자가 나타나 이들에게 길을 비켜주라고 요구하여 길을 비켜주었다. 한진중공업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들은 사측의 용역임을 알수 있다. 당시 신고한 112에서는 지구대 경찰차도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갈 수 없으니 주위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범죄행위 신고를 목살했다. 전화상으로 '이들 정체불명의 남자들의 불법행위와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으니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 아니냐', '왜 범죄신고를 받고도 목살하느냐' 등 항의했으나 지구대에서는 '경찰의 통행제한으로 갈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